

제 286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(2025.4.14.)

#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

## 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#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5. 3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5. 3. 28.

## 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전략담당관에서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## 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「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## 4. 기금운용 계획

### ▣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'24년도말 조성액 ㉑	'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5년도말 조성액 ㉑=㉒+㉓	비 고
	수입㉒	지출㉔	증감 ㉒=㉓-㉔		
842,509	323,599	185,000	138,599	981,108	

### ▣ 자금운용계획

#### ○ 수 입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<b>1,166,108</b>	921,995	<b>244,113</b>	
예치금회수	842,509	606,357	236,152	2024년 기부금 수입
이자수입	2,073	2,038	35	2024년 기금사업발생이자
기타수입	321,526	313,600	7,926	2024년 기금사업집행잔액

#### ○ 지 출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지출액	당초지출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<b>1,166,108</b>	921,995	<b>244,113</b>	
비용자성사업비	165,000	165,000	-	
예치금	981,108	756,995	224,113	2024년 기부금수입합계
기타지출	20,000	-	20,000	민간플랫폼이용 수수료

## 5. 검토의견

- 이 기금의 목적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,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우리군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.
- 2024년도 기부금 수입액은 2억 3,615만 2천원이며, 기금사업 발생이자 3만 5천원과 2024년 기금사업 집행잔액 792만 6천원을 포함해 2024년도 총기부금 수입 합계는 2억 4,411만 3천원임.
- 이에, 2024년도 총기부금 수입 합계 2억 2,411만 3천원을 예치 하고, 민간플랫폼 이용 수수료 2,000만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,110만 8천원으로 예상함.
- 같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‘디지털 서비스 개방’ 제도를 도입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계약형 민간플랫폼을 운영함에 따라 기부 창구 확대 운영 및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,

- 우리군에서도 온라인 창구를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,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, 기부 홍보,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이용 수수료 2,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함

**[계약형 민간플랫폼 도입 지자체 모금 현황]**

(단위 : 백만원)

연 번	지자체명	'24년 모금액	'24. 12월 모금액		전체모금액 대비 민간플랫폼 비율(%)	비고
			고향사랑e음	공감만세		
1	경기도 안성시	668	281	220	32.9	
2	광주광역시 남구	428	94	50	11.7	
3	광주광역시 북구	660	189	75	11.4	
4	대전광역시 중구	807	314	398	49.3	
5	경북 영덕군	1,107	237	282	25.5	
6	전남 곡성군	1,045	50	23	2.2	
7	전남 영암군	1,860	664	580	31.2	
8	전남 신안군	260	70	30	11.5	
9	전남 여수시	707	270	90	12.7	
10	충남 논산시	1,418	960	150	10.6	
11	충북 진천군	818	270	230	28.1	

## ●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# 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( 약칭: 고향사랑기부금법 )

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314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
제7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호별 방문
2.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,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20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## □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(전략담당관) [시행 2023. 1. 1.]

제8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